

의안번호	2205358
의 퇴 인	윤건영 의원
회 답 일	2024. 11. 29.
추 계 번호	24F49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4.3억원, 2031년 0.5억원 등 2025년에서 2031년까지 7년간 총 18.9억원(연평균 2.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안 제47조의4제3항신설)	-4.0	-4.5	-5.0	-1.5	-1.5	-1.0	-0.5	-18.0	-2.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47조의4제4항)	-0.3	-0.3	-0.3	-	-	-	-	-0.9	-0.3
합 계	-4.3	-4.8	-5.3	-1.5	-1.5	-1.0	-0.5	-18.9	-2.7

주: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으로 2031년(2027년 취득분)까지 감면액 발생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4제3항 신설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내진성능 확인 건물 취득시 취득세 면제 - 위 취득세 면제 건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면제	
2	안 제47조의4제4항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7조의4제3항 신설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2	안 제47조의4제4항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향후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 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20조)
- 향후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2021년 종료된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다시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감면 종료 이전 3년(2019~2021년) 간의 연평균 건수(15건) 및 건당 감면액(0.2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은 감면 종료 이전 3년(2019~2021년) 간의 연평균 건수(230건, 연간 발생건수 46건) 및 건당 감면액(111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취득한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인 점을 감안하여 2027년 재산세 감면종료 후 5년이 되는 2031년(2027년 취득분)까지 순차적으로 감면이 종

료된다고 가정

- 다만, 종전 규정에서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취득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50%하고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실적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모두 건축물 취득으로 가정하여 재산정
 - 종전 감면액(50%)을 85%(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정

□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근 2년(2021~2022년)간의 취득세 감면 연평균액(0.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2020년 12월말 신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1)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제도개요) 내진성능 확보 등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개정안)
 - 종전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제16조의2의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위의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 (제도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를 감면
 -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적용기간: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최근 2년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0.2억원에서 2022년 0.5억원 등 2년간 총 0.7억원(연평균 0.3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최근 2년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누적	연평균액
취득세 감면액	0.2	0.5	0.7	0.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나. 추계방법

(1)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종료 이전 3년(2019~2021년)간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정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취득세 감면액은 2025년 3.5억원, 2027년 3.5억원 등 3년간 총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감면 종료 이전 3년(2019~2021년) 간의 연평균 건수(15건) 및 건당 감면액(0.2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다만, 종전(2021년 감면종료) 취득세 감면이 50%인 점을 감안하여 감면액을 85%(지방세 감면 특례제한)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정

[표 3] 종전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재산정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연평균
건수	26	7	13	15
취득세 감면액	4.9	1.5	1.4	1.4
건당 취득세 감면액(A)	0.2	0.2	0.1	0.2
건당 취득세 감면액 조정 [=A+(A×35%)]	0.3	0.3	0.1	0.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향후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단위 :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누적
취득세 감면액	3.5	3.5	3.5	10.5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 감면액은 2025년 0.5억원, 2031년 0.5억원 등 7년간 총 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은 감면 종료 이전 3년(2019~2021년) 간의 연평균 건수(230건, 연간 발생건수 46건) 및 건당 감면액(111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다만, 종전(2021년 감면종료) 재산세 감면이 50%인 점을 감안하여 감면액을 85%(지방세 감면 특례제한)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정
 - － 개정안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가 면제인 점을 감안하여 2027년 감면 적용기한 종료 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감면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여 산정

[표 5] 종전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재산정

구분	2019	2020	2021	연평균
건수(연간 발생건수)	245(49)	232(46)	212(42)	230(46)
재산세 감면액(억원)	1.0	2.2	2.3	1.9
건당 재산세 감면액(만원) (A)	42	95	111	82
건당 재산세 감면액(만원) 조정 [$=A+(A \times 35\%)$]	57	128	149	111

주: 연간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를 5로 나눈 값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향후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단위 :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재산세 감면액	0.5	1.0	1.5	1.5	1.5	1.0	0.5	7.5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0.3억원, 2027년 0.3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3년간 총 0.9억원(연평균 0.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근 최근 2년(2021~2022년)간의 취득세 감면 연평균액(0.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0.3	0.3	0.3	0.9	0.3

다. 추계결과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4.3억원, 2031년 0.5억원 등 2025년에서 2031년까지 7년간 총 18.9억원(연평균 2.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4.0	4.5	-5.0	1.5	1.5	1.0	0.5	18.0	2.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액	0.3	0.3	0.3	-	-	-	-	0.9	0.3
합 계	4.3	4.8	5.3	1.5	1.5	1.0	0.5	18.9	2.7

주: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으로 2031년(2027년 취득분)까지 감면액 발생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